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41 호 2024. 2. 15.(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2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235호[공시송달공고]..... 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237호[공시송달공고]..... 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 계획 승인(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승인(신고) 고시내역

신고승인 년월일	승인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착공예정 일	준공예정 일	공사내용
		성명	주소					
'24.02.08.	제2024-1호	울산복구청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구유동 127-11번지 일원	1,100	2024. 02.13.	2024. 06.12.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 공사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235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13. ~ 2024. 2. 28.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1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산 2-5번지	박학*	사찰/경량철골조/23.76㎡, 20㎡/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237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24. 2. 14. ~ 2024. 2. 29. (15일)
-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동 889-4	김문*	건축선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143,000원

-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052-241-8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